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산물유통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창군 특용작물 생산 체계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위치(안 제3조)
- 사업 수행(안 제4조)

- 운영 방법(안 제5조)
- 위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자격, 기간, 정지 및 취소, 위탁료 및 사용료 등)(안 제6조 ~ 안 제14조)
-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7조제1항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로, 시설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수익금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는 제2항의 조문은 삭제하고자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55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3. 13.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고, 제2항에서는 해당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4조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특용작물의 가공·보관·유통·판매 등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수익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제정안 조문과 같이 “지원센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시설 자체가 수익 활동의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운영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안 제7조제2항에서 수익금의 사용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

록 규정한 부분은 운영방식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 대상인지, 사용료 납부한 민간에 귀속되는 지 등 수입금 귀속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해석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 을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 로, “얻어” 를 “받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을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수익사업) ① <u>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얻은 수익금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u></p>	<p>제7조(수익사업) <u>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 받아</u> -----.</p> <p><u><삭 제></u></p>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창군 특용작물 생산 체계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위치(안 제3조)
- 사업 수행(안 제4조)

- 운영 방법(안 제5조)
- 위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자격, 기간, 정지 및 취소, 위탁료 및 사용료 등)(안 제6조 ~ 안 제14조)
-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15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 운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특용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는 특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 개발을 비롯하여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탁과 사용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 및 허가 기간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재산의 관리 및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하였고
- 안 제14조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을 연간 사용료로 받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고, 제2항에서는 해당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4조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특용작물의 가공·보관·유통·판매 등 수익 발생이 가능한 사업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수익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이 없더라도 사업 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원센터가 특용작물의 가공·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점, 향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행 가능한 수익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안 제7조제1항은 지원센터 운영주체가 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서 일부분 유지할 필요성은 유지되나, 현행 조문과 같이 “지원센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시설 자체가 수익 활동의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운영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안 제7조제2항에서 수익금의 사용을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운영방식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 대상인지, 사

용료 납부한 민간에 귀속되는 지 등 수입금 귀속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해석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7조의 제1항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와 같이 시설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② ~ ⑤ (생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64
----------	-----

제출년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 위탁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창군 특용작물 생산 체계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특용작물”, “시설·장비”의 정의 명시

다. 사업 수행(안 제4조)

라. 운영 방법(안 제5조)

-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자격 및 선정방법(안 제8조)

- 군수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단,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바. 위탁료 및 사용료(안 제14조)

-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사.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15조)

- 군수는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 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조치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6. 10. ~ 2025. 6.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0882호, 농산물유통과-7959(2025. 6. 10.)호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7703(2025. 5. 21.)호]

- 3)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7703(2025. 5. 21.)호]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9316(2025. 5. 21.)호]
- 5) 법제심사: 적정 [기획예산과-1872(2026. 1. 27.)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568(2026. 2. 9.)호]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장비”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연구·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특용작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2. 특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
3.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4.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5. 그 밖에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법)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범위는 부지, 건물 및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익사업) ① 지원센터는 사업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얻은 수익금 등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및 선정방법) ① 지원센터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가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단,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0조(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휴·폐업 사전신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 그 30일 전까지 휴·폐업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